

목 차

코로나-19 대응을 위한  
원격수업 출결·평가·기록 가이드라인

2020. 4.

교 육 부  
교육과정정책관

I. 추진 개요 .....	1
II. 근거 법령 .....	1
III. 기본 원칙 .....	2
IV. 처리 절차 .....	2
V. 주요 내용 .....	3
1. 학생 출결 관리 .....	3
2. 학생 평가 및 학생부 기재 .....	6
VI. 향후 추진 계획 .....	8

## I 추진 개요

- (목적 및 필요성) 신학기 온라인 개학과 원격수업 도입 이후 코로나-19 감염증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중·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원격수업을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
- 교육부 훈령 개정에 따라 학교 현장에 **출결관리, 학생평가**(수행평가 포함) 및 **학교생활기록부**(이하 학생부)기재 등 전국 공통의 가이드라인 안내 필요

### 【교육부 훈령 제331호 [별표8] (출결상황관리 등)】

4. 소속학교에서 실시한 원격수업(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) 수강학생 처리
- 가. **학교의 장**이 교육상 필요에 따라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(목) 및 창의적 체험활동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48조 제4항의 **원격수업**으로 실시한 경우 **학적, 출결 및 평가 등의 처리 방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정한다.**

- (적용 대상) 전국의 초·중·고등학교,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
  - ※ 특수학교, 각종학교의 경우 학생별 특성 및 교육여건을 고려해 별도 지침 적용 가능
  - ※ 온라인 공동교육과정, 온라인 수업(전·편입 및 귀국 등에 따른 미이수 과목, 농산 어촌 도서벽지 등 학교 미개설 선택교과) 등은 제외(해당 지침에 따라 운영)
- (활용 방안) ①(시·도교육청)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지역 여건에 적합한 세부 운영 지침 마련 → ②(학교) 가이드라인 및 시도지침에 부합하는 '원격수업 운영 계획' 수립 및 시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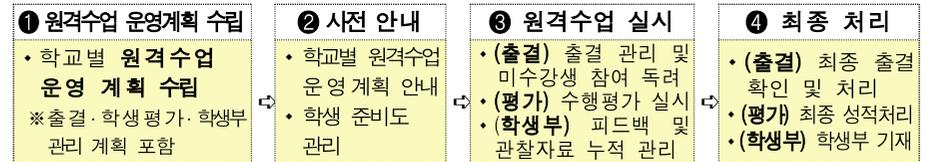
## II 근거 법령

- 「초중등교육법」 제23조제2항(교육과정 등), 제24조제2항(수업 등)
- 「초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48조제4항(수업 운영방법 등)
- 「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」(교육부 훈령 제331호)
-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(교육부 고시 제2019-211호)

## III 기본 원칙

- 학생 평가 및 학생부 기재의 '공정성과 투명성' 등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원격수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출결, 평가, 학생부 기록 원칙 마련
- 학기 중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의 학습·활동 내용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이를 학생부에 기재 가능
- 본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고 지역·학교 여건, 교사의 전문적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교육청 '세부 운영지침' 및 학교 '원격수업 운영 계획'에서 구체적인 사항 결정

## IV 처리 절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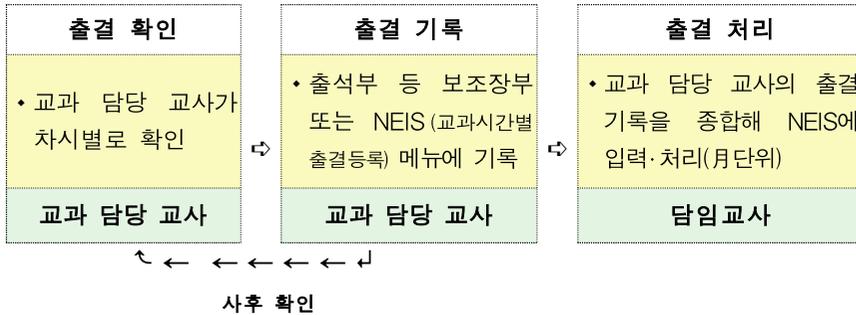
- (① 원격수업 계획 수립) 교과별(초등·학년별) 협의회 등에서 원격수업 유형별 출결·학생평가·학생부 관리 계획을 마련하고, 원격수업 관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
  - (출결) 원격수업 유형별·교과별 출결 확인 계획\* 수립
  - \* 유형별 출석 확인 방법, 출결 확인 시기를 포함한 인정 기준, 출결 기록 및 관리 방법, 출석 및 결석 사유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종류 및 제출 기한 등 포함
  - (학생평가) 원격수업의 관찰·피드백 및 수행평가 등 계획 수립
- (② 사전 안내) 학교 홈페이지,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'학교 원격수업 운영 계획'을 학생·학부모에게 안내하고, 담임교사는 학급방 등을 통해 학생을 관리
- (③ 원격수업 실시) '학교 원격수업 운영 계획에 따라 출결, 평가 운영·관리'
  - ※ 학생의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·무선 확인 등 학습 관리 실시
- (④ 최종 처리) 원격수업 시 출결·평가 결과 최종 처리 및 기재

## V 주요 내용

### 1. 학생 출결 관리

#### □ 기본 원칙

<원격수업 중 출결 확인 및 처리 절차>



- (출결 확인) 원칙적으로 **당일** 교과별 **차시 단위**로 실시하되, 수업유형에 따라 **7일 내 최종 확인**

※ 초등학교는 학생 발달 단계를 감안하여 **학교장이 출결 확인 기간을 별도 설정** 가능하며, 담임교사와 교과전담교사가 각 수업에 대해 관리(긴급 돌봄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의 원격수업 출결 여부 포함)

- (출결 기록) 교과교사가 실시간 또는 사후 출석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차시별로 출결 보조장부(출석부) 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(NEIS) 메뉴에 출석 또는 결석(결과)으로 기록

- 교과교사와 담임교사가 미 수강 학생 수강 독려 및 대체학습 안내

- (출결 처리) 교과교사의 출결 기록(출석부 등)과 학생이 제출한 결석 사유 증빙자료 확인 후 담임교사가 1주일(7일) 단위로 종합하여 월(月)단위 또는 **등교개학 후 출결(마감) 처리\*** 가능

\* 교육행정정보시스템(NEIS)을 통해 처리하되, 학교장이 학교 여건 등을 감안해 출결(마감)처리 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 결정 가능

#### □ 수업 유형별 출결 확인·인정 방법

- 원격수업에는 실시간 쌍방향(화상)수업,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,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이 포함되며,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을 혼합하는 등 다양한 원격수업 형태를 자유롭게 활용 가능
- 한 개 차시는 동영상 등 콘텐츠 시청, 보고서 작성 등 학생의 활동 시간, 교사의 피드백 시간 등을 포함하여 구성
- 본 가이드라인의 유형별 확인·인정, 처리 방법 등을 활용하여 출결을 확인(인정)하고 기록하되, 필요시 각 방법을 혼합하여 활용할 수 있음
- 시도·학교별 여건 및 특성에 따라 시도교육청별 원격수업 운영 지침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한 방법으로 운영이 가능함

<원격수업 유형별 출석 확인 방법(예시)>

수업 유형	출석 확인 방법								
	실시간 교사 확인	LMS 활용 방법*					기타(대체 확인)		
		학습 시작일	진도율	접속 기록	학습 시간	산출물 탑재	SNS	메시지 유선	증빙 자료
실시간 쌍방향	○			○			○	○	○
콘텐츠 활용	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
과제 수행				○		○	○	○	○
<b>확인(인정) 기간</b>	<b>당일</b>	<b>당일 또는 1주일(7일)내</b>							

\* e학습터, ebs클래스, 클래스팅, 구글 클래스룸, 네이버밴드, 카카오톡, MS팀즈 등

#### ○ 실시간 쌍방향 수업

- (확인·인정 방법) 교사가 플랫폼 화면, 실시간 댓글(플랫폼, 별도 학습방) 등을 활용해 학생의 출석(참여)여부 확인(인정)
- (대체 확인 방법) 접속 불량 등의 사유로 실시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SNS, 유선전화, 문자메시지 등 활용

#### ○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

- (확인·인정 방법) 학습관리시스템(LMS)을 활용해 학습시작일, 진도율, 학습시간 등을 기준으로 출석 확인(인정)

※ (참고-이수기준) ▲ 방송통신 중·고등학교: 80%, ▲ e-학습터: 60%, ▲ 온라인 수업(전·출입 등에 따른 미이수과목, 도서·산간 지역 미개설 과목): 70%

- 콘텐츠 활용 기간(출석 확인 기간)은 1주일(7일)내로 설정·적용 가능
- **(대체 확인 방법)** 학습관리시스템(LMS)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과제물 제출, SNS, 유선전화, 문자메시지 등 활용

○ 과제 수행 중심 수업

- **(확인·인정 방법)** LMS를 활용한 접속 기록, 과제 수행 결과물 제출 여부를 기준으로 출석 확인·인정
- **(기타)** 과제 인정 기준(인정 수준, 분량)은 시도별 세부 지침의 범위 내에서 학교 여건에 따라 별도 마련, 학생의 수준을 감안한 과제 제시

○ 기타 유형 수업

- **(확인·인정 방법)** 시도별 세부 지침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한 출석 인정 기준, 출석 인정 증빙 자료, 제출 기한에 따라 확인 및 기록

□ 학생 관리

- **(미 참여 학생)** 불가피하게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을 위해 각 교과별 **대체학습 프로그램**을 제시하여, **이행 결과를 근거로 출석 처리 가능**  
 ※ (예시) 서면 학습자료 및 과제 제공, 등교 시 학부모 학습 확인서 등과 함께 제출

- **(등교 중지 대상자\*)** 건강상 이유로 원격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, 등교 후 **입원치료(격리)통지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인정 처리**

\* 보건소 등에서 입원치료(격리)통지서 등을 발부받은 확진환자, 의사환자, 조사 대상 유증상자, 확진환자의 접촉자

※ 그 외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등교 후 기한(5일 또는 학교장이 정한 기간) 내 증빙서류 제출 시 '질병 결석' 처리

- **(장기결석생 관리)** 학교장이 정한 기간 이상 **장기결석** 시 ①유선 확인 및 출석 독려, ②소재 확인 불가 시 교육행정정보시스템(NEIS) 미인정 결석 등록 및 수사의뢰

※ 근거 :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7조의2 ②항 5목 및 ③항, 제92조의2 ②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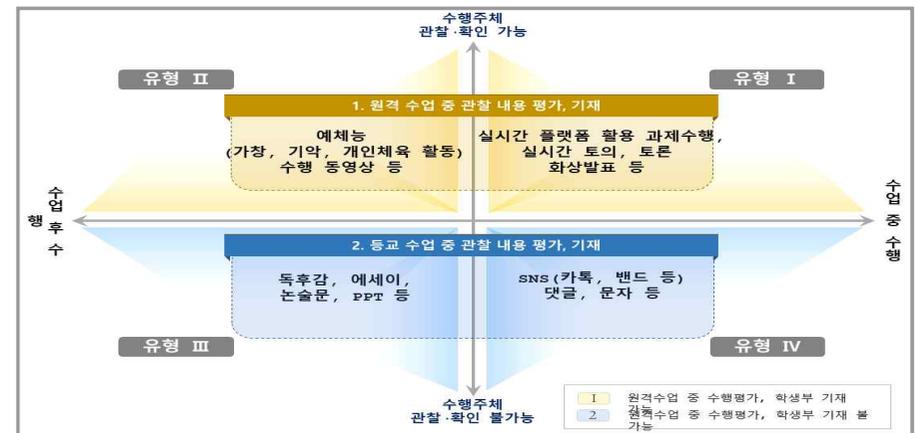
## 2. 학생 평가 및 학생부 기재

□ 기본 원칙

- 원격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을 근거로 등교 이후 **지필평가**를 통해 **성취도** 등을 확인
- 단기간 내 수행평가 집중 실시에 따른 학생 부담 완화를 위해 **수행평가 성적 반영 비율 조정** 가능
- **(원격수업)** 원격수업 중에 학생의 **학습 과정과 결과를 교사가 직접 관찰·확인**하여, 이를 토대로 **평가**하거나 **학생부에 기재**함  
 ※ 원격수업에는 창의적체험활동 포함
- **(원격수업+등교수업)** 등교개학 이후 교사가 원격수업 당시 **학생이 작성한 수행 과제물** 등을 **활용한** 수업을 실시하여 학생의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·확인한 경우 **평가 또는 학생부 기재 가능**
- **과제물 자체(완성도 등)를 평가하지 않으며, 등교수업 내에서 학생이 보여준 성취도, 태도, 참여도, 수행 역량 등을 평가·기록**  
 ※ 초등학교 저학년(1-2학년)의 경우, 원격수업 중 수행한 교육활동과 연계한 등교수업을 전개하고,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 및 학생부 기재

□ 주요 내용

< 학생평가, 학생부 기재 개념도 >



○ (유형 I) 수업 중 관찰·확인 가능형

- 교사가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을 통해 직접 관찰·확인한 학생의 수행 과정 및 결과를 평가하거나 학생부\*에 기재 가능

\* 창의적체험활동 특기사항,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,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

- (예시 1) 실시간 쌍방향(화상) 수업 시 실시한 토의·토론에서 교사가 직접 관찰한 학생의 참여도, 논리성 등을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
- (예시 2) 실시간 쌍방향(화상) 수업 시 실시한 발표 수행평가에서 교사가 직접 관찰한 학생의 발표 참여도, 이해도 등을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

○ (유형 II) 수업 후 관찰·확인 가능형

- 예체능 교과(목) 원격수업 후 학생이 제출한 과제를 통해 교사가 직접 관찰·확인한 학생의 수행 결과 평가하거나 학생부 기재 가능

- (예시 1) 학생이 수행하여 제출한 생활체조 영상을 교사가 직접 관찰·확인하여 자세 및 순서 정확성 등을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
- (예시 2) 학생이 수행하여 제출한 리코더 연주 영상을 교사가 직접 관찰·확인하여 주법, 소리의 정확성 등을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

○ (유형 III) 수업 후 관찰·확인 불가형

- 원격수업 시 학생이 제출한 과제\*의 수행 주제 및 과정을 교사가 직접 관찰할 수 없는 경우 평가 및 학생부 기재 불가

\* 에세이, 독후감, PPT, UCC 등

- 단, 등교수업(불가 시 실시간 쌍방향 원격 수업)시 해당 과제물과 연계한 수업활동을 전개한 경우 교사가 직접 관찰·확인한 내용은 평가하거나 학생부 기재 가능

- (예시 1) 등교수업에서 '비평의 기법'에 대해 지도하고, 원격수업 중 작성한 독후감을 수정·작성 및 발표하게 하여 교사가 관찰·확인한 이해도, 태도 등을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
- (예시 2) 원격수업 중 작성한 실험 계획서를 바탕으로 등교수업에서 실험을 실시하고, 실험 중 교사가 관찰·확인한 학생의 이해도 등을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

○ (유형 IV) 수업 중 관찰·확인 불가형

- 원격수업 시 학생이 실시간 작성한 자료\*의 수행 주제 및 과정을 교사가 직접 관찰할 수 없는 경우 평가 및 학생부 기재 불가

\* 문자메시지, 댓글, SNS 메시지 등

- 단, 등교수업(불가 시 실시간 쌍방향 원격 수업)시 해당 자료 및 교사 피드백과 연계한 수업활동을 전개한 경우 교사가 직접 관찰·확인한 내용은 평가하거나 학생부 기재 가능

- (예시 1) 원격수업 시 채팅 등으로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등교수업에서 3:3 토론을 진행하고, 토론 활동에서 관찰한 학생의 논지, 태도 등을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
- (예시 2) 원격수업 시 댓글을 활용하여 창작한 모둠별 단편극을 바탕으로 등교수업에서 실시한 모둠별 단편소설 창작 활동에서 교사가 관찰한 창의성, 협동성 등을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

VI 향후 추진 계획

- 원격수업 운영, 출결·평가·학생부 기재 관련 실시간 온라인 연수 실시(4.8.예정) 및 동영상 보급

※ 원격수업 출결·평가 가이드라인 설명 및 학교급별 원격수업 운영 실연 영상 실시간 방영(Youtube, “교육부TV” 채널) 후 ‘학생부종합지원포털’에 연수 영상 탑재

\* <https://star.moe.go.kr>

- 코로나-19의 장기화로 인해 학기 전체를 원격수업으로 실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추가 대책 마련·안내